

의안번호	제 298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344 회)

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11월 2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1월 2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재단명칭 변경 반영 및 중소기업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 변경(제4조제2항)
  - 중소기업대상 선정을 위해 운용중인 중소기업대상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
-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명칭 변경(제8조제2항)
  - 2015.1.1.일부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으로 재단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반영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”를 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”를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3조 (생 략)	제1조 ~ 제3조 (현행과 같음)
제4조(위원회 설치) ① (생 략)  ② <u>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-----</u> -----	제4조(위원회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<u>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경제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-----</u> -----
제8조(홍보 등) ① (생 략)  ② ----- <u>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</u> 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.	제4조(홍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 <u>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</u> 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제9조 ~ 제11조 (생 략)	제9조 ~ 제11조 (현행과 같음)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

제4조(위원회 설치) ①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 대상선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중소기업 관련기관, 학계, 언론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위촉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제8조(홍보 등) ①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홍보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대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### 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

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.

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
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
3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
1.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·회의 참석
2. 의회·정부·국회·정당·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
3.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
4.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
5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·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□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